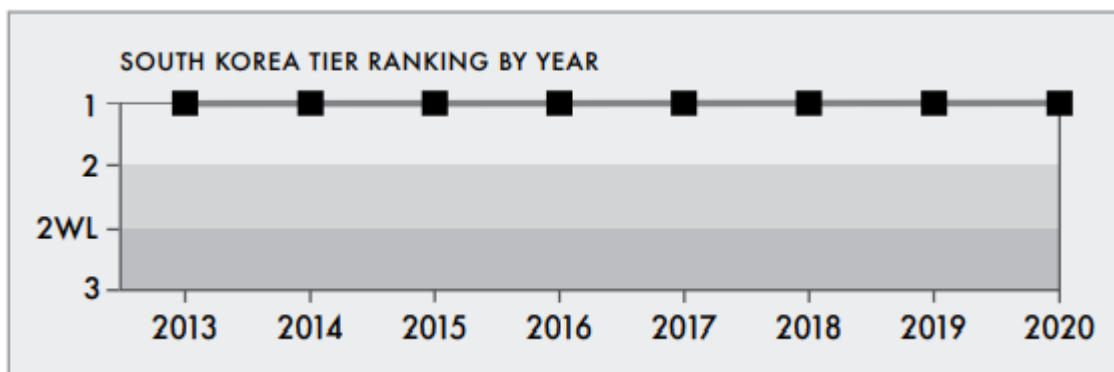


## 2020 년 인신매매 보고서

### 대한민국: 1등급

대한민국(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하게 준수하고 있다. 정부는 보고 대상 기간 중에 진지하고 꾸준한 노력을 계속 보여주었다. 따라서 한국은 1등급을 유지했다. 어선 선원의 노동 인신매매 1건에 대한 수사, 성적 인신매매에 대한 공무원 교육,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일선 경찰과 검찰에 배포, 어선에서의 노동 인신매매와 관련한 정부 부처간 회의 개최, 유희비자 소지자가 성적 인신매매에 취약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규정 채택 등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최소 기준을 준수하고 있지만 식별된 인신매매 피해자의 수를 집계하지 않았고, 일부의 경우 당국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인신매매범의 강요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 구금, 추방되기도 하였다. 정부는 대다수의 인신매매범에게 장기복역형을 선고하지 않았고, 노동 인신매매 수사와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는 미흡하였다. 국제법에 맞게 인신매매를 정의한 포괄적인 법이 없어 정부의 인신매매 퇴치 노력을 어렵게 하였다.

### 한국의 연도별 등급



### 우선 권고사항 :

상업적 성매매 종사자 및 이주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식별해야 한다. • 성적 인신매매 및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경찰, 출입국, 노동, 사회복지 관련부처 공무원에 대한 피해자 식별 지침 교육을 강화, 개선해야 한다. • 2000년 유엔 인신매매방지(TIP) 의정서에 제시된 정의에 부합하도록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성적 인신매매의 경우 다른 중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규정하는 등 충분히 엄격한 처벌을 명시한 포괄적인 인신매매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 인신매매법, 특히 노동 인신매매에 대한 수사, 기소, 유죄판결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인신매매법의 강요로 인해 피해자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하며 외국인 피해자 사건의 경우 경찰과 출입국 본부 간의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 • 유죄가 확정된 인신매매범 대다수에게 장기복역형을 선고해야 한다. • 인신매매 피해자들, 특히 남성, 청소년, 외국인, 장애인 피해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경찰, 출입국, 노동, 사회복지 부처 공무원들이 성적 인신매매 및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연계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수립, 이행해야 한다. • 법집행 담당관, 검찰, 사법 공무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들이 인신매매를 국제법상에 정의된 대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한국 국적 어선에서 강제노동을 시키는 자들에 대한 수사 와 기소를 늘려야 한다. • 인신매매를 상업적 성매매 등 기타 범죄와 구분하는 인신매매 법 집행 및 피해자 보호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 이주 노동자 지원 센터나 정부의 핫라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관련 인식 제고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최근 신설된 범정부 태스크포스 등을 통해 성적 인신매매 및 노동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관한 정부 부처간 조율을 강화해야 한다.

## 사법 처리

정부는 법 집행 노력을 계속해왔으나 노동 인신매매법에 대한 기소 노력은 여전히 부족했다. 형법 제31장의 여러 조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성적 인신매매 및 노동 인신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인신매매 사범을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형량은 충분히 엄격한 수준으로, 성적 인신매매와 관련하여서는 성폭행 등 다른 중범죄에 대해 규정된 형량에 해당한다. 국제법상 인신매매에 관한 정의와는 어긋나게, 형법 제289조(인신매매)는 인신매매의 정의를 착취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로 한정하고 범죄의 필수요소로서 강요, 사기 또는 강압을 행사하는 것은 포

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동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와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가 제289조에서 다루지 않는 인신매매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아동 성적 인신매매를 피해자의 국가간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잘못 정의했다. 그러나, 동법의 다른 여러 조항이 그러한 이동이 없었던 아동 성적 인신매매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인신매매를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정의한 포괄적 법률이 없다보니 법 집행기관과 검찰이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 이해하는 정도가 상이하였다. 정부 공무원들이 인신매매를 상업적 성매매, 약취, 가정폭력, 그 외 다른 형태의 성폭력 등 관련 범죄와 합쳐서 다루는 경우가 빈번했다.

정부가 형법상 모든 세부항목에 해당하는 피해자와 범죄자의 일반 통계를 내고 있지만 인신매매 범죄를 상업적 성매매나 약취와 같은 관련 범죄와 충분히 구분짓지 않았다. 이는 상당부분 공무원들의 인신매매 정의에 대한 이해부족과 국제법에 부합하는 포괄적 인신매매 법률이 없는데 기인하고 있다. 2019년 정부는 인신매매 관련 범죄 395건을 수사하였고 (2018년 372건), 90명을 기소하였으며 (2018년 109명), 77명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2018년 75명) 보고했다. 정부는 30명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지만 인신매매 관련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대다수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부가 인신매매범에게 충분히 엄격한 처벌을 내리지 않아 인신매매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인신매매를 저지른 경우도 일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해양경찰은 어업 관련 노동 인신매매 한 건을 수사하였다. 한 NGO는 정부의 인신매매 수사가 사전에 수사관의 방문 계획을 통지하고, 선원들이 편하게 공개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노조 사무실 같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 법 집행 당국과 성적 인신매매 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협력하였다. 해외 아동 성매매 관광을 한 한국인 남성들에 대한 일부 제보가 있었으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형사 수사나 기소는 보고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417명의 신입 및 재직 직원들과 452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과 보호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법 집행 담당관

들이 받은 교육에서는 노동 인신매매를 별도로 다루지 않았고, 일부 관리들은 특히 채무를 빌미로 한 강압 행위가 있는 사건의 경우 노동 인신매매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노동 인신매매 가능성이 있는 일부 사례에 대해 행정 위반건으로 처리했고 사건을 법 집행기관에 형사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았다. 일부 NGO들은 정부가 채무를 빌미로 한 강압 행위가 있는 사건은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본국에서 이뤄진 채용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인식하고 이를 기소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일부 공무원들은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장기 또는 영구거주를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피해자들이 자신의 인신매매범 수사에 증인으로 참여하기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 공무원들이 연루된 것도 당해연도의 법 집행을 저해한 우려 사항중 하나였다. 2015년에서 2019년까지 법 집행 당국은 경찰을 비롯한 500명 이상의 공무원을 성매매 혐의로 체포하였다. 정부는 이들 사례에서 인신매매에 해당하는 건이 있는지 구분했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착취에 연루되었을 수도 있는 상업적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에게 수사 정보를 귀뜸해준 경찰관 1명을 징역 6년에 처했다. 경찰청은 성매매 업소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은 경찰 30명 가운데 22명을 파면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들이 인신매매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했다는 보고는 없었다.

## 피해자 보호

정부는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 노력을 지속해왔으나 노동 인신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노력은 부족했다. 식별된 인신매매 피해자 수를 집계하거나 제공하지 않아 전반적인 피해자 보호 노력 중 일부는 분명히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식별 지침을 일선 경찰과 검찰에 배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침을 법무부와 경찰청에 지속적으로 배포하였다. 법 집행 당국은 상업적 성매매 종사자를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지원시설에 인계하였으나 그 가운데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가 몇 명인지는 파악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6,887 명, 2019년 6,924명에게 자체 지원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일부 직원들이 충분히 식별 절차를 밟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식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여성가족부는 ‘홍등가’ 지역에서 상업적 성매매 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활동을 벌였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몇 명 식별했는지는 보고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은 실태 점검시 피해자 식별 지침을 활용하지 않았으며 착취 피해 근로자들이 정부 핫라인이나 이주 노동자 지원 센터에 연락했을 때 일부 직원들은 인신매매 가능성에 대한 지표를 바탕으로 인신매매 여부를 가려내지 않았거나, 피해자들을 관련 서비스로 연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해당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도록 장려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2020년 1월 법무부는 출입국 담당관이 보다 용이하게 유흥비자 소지자들과의 접촉하게 하고, 이들이 비자를 갱신할 때 성적 인신매매 식별 설문조사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이행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한 NGO는 이같은 조치가 피해자가 스스로 신분을 밝히도록 강제할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처벌이나 추방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해 착취 사실을 밝히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경찰청은 인신매매 피해자 등 모든 범죄 피해자들을 법 집행기관과의 첫 접촉 시점부터 보호·지원 시스템에 인도하는 단계까지 책임지는 전담팀을 운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관련 서비스에 연계하는 데 지침이 되는 공식 연계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96개의 시설을 지원하였고 이들 시설은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상담, 쉼터, 교육, 재활 등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전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보고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로 여성 피해자들을 지원하였지만, 정부는 상담 및 의료·법률지원 등 일부 서비스를 남성 피해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NGO들은 피해자 지원 서비스가 특히 남성, 장애인, 외국인, 청소년 피해자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외국인 범죄 피해자들에게 G-1 비자를 발급해주어 최장 1년간 한국에 체류하고 일하면서 수사 및 기소에 협조하게 했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기간 동안 G-1비자를 발급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수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동기간 동안 해외에서 착취당한 한국인 피해자의 국내 송환을 지원한 적도 없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정부는 그러한 보상을 받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하지 않았다.

비정부기구들은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해서 피해자들을 잘못 식별하고 인신매매범의 강요로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처벌받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속적으로 보고했다. 또한, 정부가 인신매매범에 대한 수사 도중 일부 외국인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구금했고 수사 종료 뒤 이들을 추방했다는 NGO 보고도 있었다. 경찰청, 해양수산부, 법무부는 자진 신고한 피해자를 포함해 일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추방된 사례가 있다고 인정하였는데 수사 기관과 출입국 당국간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꼽았다. 경찰청은 착취 사실을 자진 신고한 피해자의 불법 체류 자격은 출입국 당국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방침이 자진 신고하지 않거나 변호사나 기타 서비스 제공자를 동반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다. 한 NGO는 경찰이 외국인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충분히 식별하지 않았고, 48시간 이내 출입국 당국에 피해자를 인도해야했다고 보고하였다. 대개 취업 알선 사기로 자의로 입국했으나 이후 인신매매범들에게 착취당한 일부 외국인 피해자들이 비자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NGO보고가 있었다.

## 예방 노력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성매매 및 성적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정부 노력을 조율하는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이 보고기간 중 두 차례 회의를 가졌다. 추진점검단원들은 채팅앱을 통한 미성년자 온라인 모집 등을 포함한 성적 인신매매 예방 조치와 예술흥행비자 소지자 보호를 논의했다. 정부는 대부분의 보고기간동안 노동 인신매매를 다루기 위한 노력을 적절히 조율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3월, 성적 및 노동 인신매매 퇴치를 위한 노력을 조율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가 설립되었다. 외교부 차관보가 단장을 맡고, 청와대,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해안경찰청, 고용노동부의 고위급 대표로 구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고기간 동안 모든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조율하는 전담 정부기관의 부재로 인해 피해자 보호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2019년 11월, 외교부는 수산업계 노동 인신매매를 논의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를 주관했다. 정부는 노동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보고하지 않았으나 공영방송 프로그램과 광고 캠페인을 통해서 성적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다.

성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정부는 3년마다 성매매 실태조사를 해야한다. 보고기간 동안 여성가족부는 2019년 5월에서 9월에 해당하는 조사를 완료했고 2020년 4월에 그 결과를 발간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재외 한국 외교공관과 한국인이 인신매매에 취약한 나라들에 위치한 인신매매 방지기관에 인신매매에 관한 자료를 계속해서 배포했다. 2020년 1월, 법무부는 예술흥행 비자 소지자들의 체류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근로자들이 외국인등록증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들을 대리해서 기획사 소유주가 비자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도입했다. 여성가족부는 교사 및 사법집행당국을 대상으로 성매매와 성적 인신매매에 사용되는 채팅앱과 온라인수단 사용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조직했다. 정부는 성매매 광고를 위해 사용된 휴대폰 번호를 정지시켰다. 성매매 수요를 줄이기 위해, 관계자들은 학교, 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에 성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공항, 기차역, 여행사 등지에서 아동성매매관광의 불법성을 알렸다.

정부는 잠재적 인신매매 범죄 신고용 핫라인을 운영하지 않았지만, 여성가족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핫라인을 13개국 언어로 운영했고, 해양수산부는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들을 위한 핫라인을 계속 운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정부 핫라인으로 전화를 걸어도 통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해양수산부는 2년동안 받은 전화가 없었다고 관계자들이 보고했다. 보고기간 동안, 해양수산부는 정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2022년까지 원양어선 내 선원들에게 인터넷 시설을 제공하도록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정부는 예술흥행 비자를 소지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9곳의 사업장을 조사했고 위반사례 65건을 적발했으나 이 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가 발견되었는지 여부는 보고하지 않았다. 2019년, 고용노동부는 이주근로자 및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포함하여 1만 건 이상을 조사했으나, 강제노동 사례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일시를 고용주들에게 미리 통보했고, 이 때문에 비양심적인 고용주들은 인신매매의 흔적을 숨기고, 조사에 앞서 피해자들에게 인터뷰를 지도할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어선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해양수산부는 어선을 소유한 회사에 대해 주로 조사했고 조사관들이 근로자들과 면담하기 위해

선박에 탑승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보고했다. 선원법상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수령을 금지하는 조항이 적절히 시행되지 못하여, 모집자들이 외국인선원들을 빛의 노예로 묶어두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선원들에 가해진 인권유린 사례를 밝히기 위해 반 년마다 열리는 조사를 계속 실시했다. 급여 미지급, 학대, 열악한 근로조건과 연관된 범죄로 2019 년에 81 건의 체포사례가 있었다(2018 년 90 건). 하지만, 정부는 이들 중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는지는 보고하지 않았다.

비정부기구들은 인신매매범들이 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오는 이주근로자들에게 도착전·후 교육을 제공했다. 하지만 비정부기구들은 이러한 교육이 근로자의 권리와 인신매매에 대한 인식 제고보다는 한국 문화에 대한 적응에 주로 초점을 둔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재정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43 곳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통역, 의료치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모집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외국인선원을 모집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을 기관이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하지만 비정부기구들은 정부가 모집기관들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비정부기구들은 정부가 고용허가제로 고용된 이주근로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에 착취에 더 취약하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착취 혹은 위반사례를 보고한 근로자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비정부기구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고 알려졌고, 대신 직장을 변경할 수 있는 허락을 받기 전까지 고용부에 착취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수개월을 보냈다고 한다. 또한 현지에 있는 한 비정부기구는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은 적은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 **인신매매 개요**

지난 5 년간 보고된 바와 같이, 인신매매범들은 한국 내에서 내국인과 외국인 피해자들을 착취하는 한편,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 피해자들도 착취하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범들은 가출 청소년, 가정폭력 피해자 등 한국 여성과 아동을 주점, 나이트클럽, 기타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로 착취하고 있다. 인신매매범들은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해, 그리고 성 구매자와의 소통을 통해 인신매매를 용이하게 할 용도로 스마트폰과 채팅앱을 많이 사용하였다. 채팅방 운영자들은 아동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하여 한국인 여성 및 아동을 모집하고 포르노 영상 제작 참여에 강요하기 위해서 노출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일부 한국 여성들은 관광, 취업, 유학 비자로 기착국에 입국하여 안마시술소, 살롱, 주점, 식당이나 인터넷 성매매업체를 통해 성적 인신매매로 착취당하고 있다.

일부 한국 여성들은 인신매매범들은 유흥업소 업주들이나 악덕 사채업자들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다. 중국, 태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기타 아시아 국가 및 중동, 남미 출신의 남성 및 여성들이 한국 내에서 강제노동과 성적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하였다. 인신매매범들은 유흥업소 소유주 혹은 사채업자에게 빚을 진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한다. 성적 인신매매범들은 대부분 필리핀과 태국 출신인 E6-2 호텔유흥 비자를 소지한 일부 외국 여성들을 항만과 미군부대에 근접한 “외국인 전용” 주점을 포함해서 술집과 클럽에서 착취했다. 일자리 알선업체, 비도덕적인 모집기관, 주점 및 클럽 운영자들은 가수 혹은 공연자로 일한다는 거짓약속을 하고 외국인 여성들을 모집하여 술을 팔며 장시간 일하고 클럽에서 성매매할 것을 강요한다.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적절한 휴가 일수를 제공받지 못하고, 괴롭힘 및 언어·신체 폭력에 직면하고,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거나, 한국을 떠나거나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없도록 급여지급이 보류된다. 일부 주점 운영자들은 피해자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압수하고 피해자들의 외출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과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들은 공장이나 다른 업종에서 단기 취업한다는 허위약속을 받고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지만, 이들이 주점에서 일하도록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인신매매범들이 여권을 빼앗는다. 국제결혼소개업체를 통해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위해 모집된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니아 출신의 일부 여성들은 한국 도착 후 성적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에 취약하다. 일부 한국 남성들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아동성매매 관광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신매매범들은 신체 혹은 지적 장애가 있는 한국 남성들이 어선, 염전, 가축농장에서 일하도록 강요했다. 비도덕적인 노동자 모집자들은 때로는 수천달러에 이르는 과도한 소개비용 부과를 통해서 이주노동자, 특히 베트남, 파키스탄, 중국, 인도네시아 출신들의 부채에 의한 강제노동에 일조했다.

상당수가 정부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약 40만 명은 어업, 농업, 축산업, 요식업, 제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부는 강제노동에 준하는 여건에서 일하고 있다. 어선 소유주, 선장, 취업알선인들은 한국인들이 등록, 운영하는 어선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한국은 피지를 비롯한 그 밖의 다른 태평양 항구로 출항하는 원양어선에서 강제노동을 강요 받는 동남아시아 선원들이 거쳐가는 경유국이다. 정부나 선주협회의 소관 밖에서 운항되는 소형 어선에 탑승한 외국인 선원들은 부채로 인한 강제노동을 포함하여 착취에 직면한다. 정부 관리들이 인신매매와 관련 범죄에 공모했음을 암시하는 일화를 담은 보고가 있다. 인신매매범들은 처벌·추방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기습방문 혹은 출입국 검사에 앞서 부패한 경찰·출입국 관리들로부터 미리 정보를 받기 위해 일부 사법당국자들과의 관계를 활용한다고 알려졌다. 비정부기구들은 경찰을 포함한 일부 공무원들이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했고 일부 개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부추겼다고 보고했다. 이들 중에 성적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었다. 지자체가 한국 농민들이 중개인을 통해 외국여성과 결혼하도록 이들을 장려하고 재정지원을 제공했다는 보고도 있다. 이 여성들은 성적 인신매매와 가사노예로 착취당했을 수도 있다.